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691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무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5조의6 및 별표 4의2 신설)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800만원에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시행시기
(안 부칙 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